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홈페이지(brand.hldni.com/cheongju)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00-9118)을 실시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약자 본인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 05. 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06. 23.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은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당첨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신 분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23.)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제47조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제외) 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brand.hldni.com/cheongju)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이전기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10%) 완납 이후에 사업주체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전매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 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에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청주시 거주자)	기타지역 (전국 거주자)				
일 정	07월 03일(월) ~ 07월 04일(화)	07월 05일(수)		07월 06일(목)	07월 12일(수)	07월 15일(토) ~ 07월 21일(금)	07월 23일(일) ~ 07월 26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이전기관 제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건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20565호(2023.06.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산2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29층, 8개동 총 874세대

[특별공급 총 590세대(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171세대, 일반[기관추천] 84세대, 다자녀가구 84세대, 신혼부부 152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75세대 포함), 일반공급 2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면적 단위 : m²]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이전 기관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267	01	76.7400A	76A	76.7400	26.4100	103.1500	49.7700	152.9200	45.1787	250	50	25	25	45	7	22	174	76	10
		02	76.8000B	76B	76.8000	26.5800	103.3800	49.8000	153.1800	45.2140	54	10	5	5	9	1	4	34	20	2
		03	84.8100A	84A	84.8100	28.5800	113.3900	55.0000	168.3900	49.9297	476	95	47	47	85	14	43	331	145	21
		04	84.9700B	84B	84.9700	28.9000	113.8700	55.1000	168.9700	50.0239	77	15	7	7	13	2	6	50	27	3
		05	122.8700A	122A	122.8700	44.6100	167.4800	79.6900	247.1700	72.3365	2	-	-	-	-	-	-	-	2	-
		06	122.9500B	122B	122.9500	42.7700	165.7200	79.7400	245.4600	72.3836	3	-	-	-	-	-	-	-	3	-
		07	134.5400A	134A	134.5400	47.1700	181.7100	87.2600	268.9700	79.2069	3	-	-	-	-	-	-	-	3	-
		08	134.3000B	134B	134.3000	46.0500	180.3500	87.1000	267.4500	79.0656	9	1	-	-	-	-	-	1	8	-
	계										874	171	84	84	152	24	75	590	284	36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6.7400A	76.8000B	84.8100A	84.9700B	122.8700A	122.9500B	134.5400A	134.3000B
약식표기	76A	76B	84A	84B	122A	122B	134A	13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진입로(가감속차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비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금액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11.24	2024.04.24	2024.09.24	2025.02.24	2025.07.24	2025.12.24	입주지정일
76A	1	2	125,774,000	213,826,000	-	339,600,000	10,000,000	23,960,000	33,960,000	33,960,000	33,960,000	33,960,000	33,960,000	33,960,000	101,880,000
	2	10	125,774,000	219,226,000	-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3	10	125,774,000	224,726,000	-	350,500,000	10,000,000	2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35,050,000	105,150,000
	4	10	125,774,000	230,126,000	-	355,900,000	10,000,000	2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106,770,000
	5~9	50	125,774,000	233,826,000	-	359,600,000	10,000,000	2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107,880,000
	10~19	100	125,774,000	237,426,000	-	363,200,000	10,000,000	2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108,960,000
	20~24	44	125,774,000	241,026,000	-	366,800,000	10,000,000	2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110,040,000
	25층 이상	24	125,774,000	244,726,000	-	370,500,000	10,000,000	2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37,050,000	111,150,000
76B (102동)	2	1	125,873,000	212,227,000	-	338,100,000	10,000,000	2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33,810,000	101,430,000
	3	1	125,873,000	217,527,000	-	343,400,000	10,000,000	2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103,020,000
	4	1	125,873,000	222,927,000	-	348,800,000	10,000,000	24,880,000	34,880,000	34,880,000	34,880,000	34,880,000	34,880,000	34,880,000	104,640,000
	5~9	5	125,873,000	226,427,000	-	352,300,000	10,000,000	2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105,690,000
	10~19	10	125,873,000	230,027,000	-	355,900,000	10,000,000	2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106,770,000
	20~24	5	125,873,000	233,627,000	-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25층 이상	3	125,873,000	237,127,000	-	363,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76B (104동)	1	1	125,873,000	210,327,000	-	336,200,000	10,000,000	2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100,860,000
	2	1	125,873,000	215,727,000	-	341,600,000	10,000,000	2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34,160,000	102,480,000
	3	1	125,873,000	221,127,000	-	347,000,000	10,000,000	2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4	1	125,873,000	226,527,000	-	352,400,000	10,000,000	2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105,720,000
	5~9	5	125,873,000	230,127,000	-	356,000,000	10,000,000	2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10~19	10	125,873,000	233,727,000	-	359,600,000	10,000,000	2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35,960,000	107,880,000
	20~24	5	125,873,000	237,327,000	-	363,200,000	10,000,000	2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108,960,000
	25층 이상	4	125,873,000	240,927,000	-	366,800,000	10,000,000	2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36,680,000	110,040,000

주택형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금액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11.24	2024.04.24	2024.09.24	2025.02.24	2025.07.24	2025.12.24	입주지정일
84A	1	5	139,001,000	233,999,000	-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2	21	139,001,000	239,999,000	-	379,000,000	10,000,000	2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3	21	139,001,000	245,899,000	-	384,900,000	10,000,000	2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38,490,000	115,470,000
	4	21	139,001,000	251,899,000	-	390,900,000	10,000,000	2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117,270,000
	5~9	105	139,001,000	255,899,000	-	394,900,000	10,000,000	2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10~19	198	139,001,000	259,899,000	-	398,900,000	10,000,000	2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39,890,000	119,670,000
	20~24	73	139,001,000	263,899,000	-	402,900,000	10,000,000	3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40,290,000	120,870,000
	25층 이상	32	139,001,000	267,899,000	-	406,900,000	10,000,000	3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40,690,000	122,070,000
84B	1	2	139,263,000	229,937,000	-	369,200,000	10,000,000	2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2	3	139,263,000	235,937,000	-	375,200,000	10,000,000	2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112,560,000
	3	3	139,263,000	241,837,000	-	381,100,000	10,000,000	2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38,110,000	114,330,000
	4	3	139,263,000	247,737,000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5~9	15	139,263,000	251,737,000	-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10~19	30	139,263,000	255,637,000	-	394,900,000	10,000,000	2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20~24	13	139,263,000	259,537,000	-	398,800,000	10,000,000	2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39,880,000	119,640,000
	25층 이상	8	139,263,000	263,537,000	-	402,800,000	10,000,000	30,280,000	40,280,000	40,280,000	40,280,000	40,280,000	40,280,000	40,280,000	120,840,000
122A	102동 최상층	1	201,380,000	362,291,000	36,229,000	599,900,000	10,000,000	4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59,990,000	179,970,000
	104동 최상층	1	201,380,000	385,110,000	38,510,000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122B	21~24층	1	201,511,000	390,718,000	39,071,000	631,300,000	10,000,000	5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63,130,000	189,390,000
	25층 이상	2	201,511,000	398,536,000	39,853,000	639,900,000	10,000,000	53,990,000	63,990,000	63,990,000	63,990,000	63,990,000	63,990,000	63,990,000	191,970,000
134A	21~24층	1	220,507,000	417,812,000	41,781,000	680,100,000	10,000,000	5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204,030,000
	25층 이상	2	220,507,000	424,085,000	42,408,000	687,000,000	10,000,000	5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134B	20층 이하	2	220,115,000	418,169,000	41,816,000	680,100,000	10,000,000	5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68,010,000	204,030,000
	21~24층	2	220,115,000	424,441,000	42,444,000	687,000,000	10,000,000	5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25층 이상	5	220,115,000	430,714,000	43,071,000	693,900,000	10,000,000	5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208,170,000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22타입, 134타입의 건축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해당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로 수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납부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위탁사 또는 시공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위탁사 또는 시공사는 대출알선의 의무가 없고, 수분양자는 대출알선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세대,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납부(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함)
- 중도금은 해당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중복입금 등)은 환불이 불가하며, 분양 공급금액 중 추후 도래할 차수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이월하여 분양대금 납부금으로 처리 합니다. (단, 분양대금을 초과한 과납 금액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 접수 후 과납된 금액만큼 환불 가능하며, 과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 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와 공급되는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코어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 수입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입주예정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6A	76B	84A	84B	122A	122B	134A	134B	합 계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20% 범위)		50	10	95	15	-	-	-	1	17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주택건설량의 10%범위)	국가유공자	5	1	10	1	-	-	-	-	17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9	2	-	-	-	-	1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9	2	-	-	-	-	17
	중소기업 근로자	5	1	9	1	-	-	-	-	16
	장애인	5	1	10	1	-	-	-	-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25	5	47	7	-	-	-	-	84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주택건설량의 18%범위)		45	9	85	13	-	-	-	-	1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3%범위)		7	1	14	2	-	-	-	-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85㎡이하-주택건설량의 9%범위)		22	4	43	6	-	-	-	-	75
합 계		174	34	331	50	-	-	-	1	59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요건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청약자격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 예치기준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71세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거 공급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7항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대상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현도농공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가 속한 청주시(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현도농공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③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내수농공단지,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현도농공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내산업단지)
대상자 세부사항	•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범위** :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의 범위**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방과후 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연구기관의 범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개정 2021.08.17.>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2020.05.19.>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에서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 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제2항의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방법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에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 등 방지를 위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청약은 금융/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5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 06. 23.	해당 세대의 전년도(2022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2021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 7,811,342원	7,622,057원 ~ 9,146,467원	8,040,493원 ~ 9,648,590원	8,701,640원 ~ 10,441,967원	9,362,787원 ~ 11,235,343원	10,023,934원 ~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 9,113,233원	7,622,057원 ~ 10,670,689원	8,040,493원 ~ 11,256,689원	8,701,640원 ~ 12,182,295원	9,362,787원 ~ 13,107,900원	10,023,934원 ~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 10,415,123원	9,146,468원 ~ 12,195,290원	9,648,591원 ~ 12,864,787원	10,441,968원 ~ 13,922,622원	11,235,344원 ~ 14,980,458원	12,028,721원 ~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소형저가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7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제53조 9호는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6.2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 10,415,123원	9,908,674원 ~ 12,195,290원	10,452,641원 ~ 12,864,787원	11,312,132원 ~ 13,922,622원	12,171,623원 ~ 14,980,458원	13,031,114원 ~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 23.)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당해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입주자 및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각 유형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전체 주택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양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신청자가 기타지역(전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제외)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만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산업단지종사자(이전기관)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7.03.(월) ~ 2023.07.0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2023.07.05.(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7.06.(목)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단,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외,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tr><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3. 07. 12. (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3.07.15.(토)~2023.07.21.(금) (7일간) (10:00~16:00)	- 일시 - 2023.07.23.(일)~2023.07.26.(수) (4일간)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 장소 -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건본주택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brand.hldni.com/cheongju)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 07. 12.(수) ~ 2023. 07. 21.(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 07. 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하여 당첨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3.07.15.(토)~2023.07.21.(금) (7일간)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처	• 당사 견본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당첨자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신청자격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분리세대등)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에 및 제5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정해진 기간 내(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 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표1]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은 불가
	○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이전기관 특별공급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본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제출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서식2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 산업단지 중사자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허가증(국,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2. 법인 인감증명서(국,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3. 제 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주기업에만 해당) 4.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구기관에만 해당) 5.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만 해당)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해당) 7.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8.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9. 비자 사본(외국인만 해당)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13. 재직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 위 첨부서류 외[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서약서	본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별첨서식 서약서 제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2)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등재),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신청자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이하 “직인날인” 서류 동일 적용)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무서 -등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원본)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직자	2022.01.0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직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건본주택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또는 홈택스
	2021.01.01.부터~공고일 전일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와 올해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개년도 소득증빙 서류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 확인서 • 202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폐업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홈택스
자산입증서류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군복무 중으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해당자격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표4)**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 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 (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②, ③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토지e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 (전체 세대원별 각각 조회)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추첨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불가함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3.07.23.(일)~2023.07.26.(수) (4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추후 통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		자격확인 제출서류 일체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지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계약자 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비고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계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1023-01-0424783	(주)코람코자산신탁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천장형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현관중문, 가구 등) 납부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바랍니다.
- ※ 계약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 모든 분양대금은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 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 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청약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3)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5)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6) 두 곳 이상 복수청약을 하고 동일한 발표일에 이중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최초분양 계약자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 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지정 기간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등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키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및 계약 구비서류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 (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②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위탁자가 선정합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 대출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총분양대금의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위탁자가 부담(납부)하며(단, 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 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 해야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 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각 중 대출보증서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 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거나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 전 약 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5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 학교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 사항

- 금회 공동주택 사업예정지의 통학구역은 봉정초등학교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 및 현장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m²,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6A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
76B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
84A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
84B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
122A	24,000,000	2,400,000	2,400,000	19,200,000	-
122B	24,000,000	2,400,000	2,400,000	19,200,000	-
134A	27,000,000	2,700,000	2,700,000	21,600,000	-
134B	27,000,000	2,700,000	2,700,000	21,600,000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전북은행	1023-01-0424802	(주)코람코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추가옵션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201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101동1102호 당첨자(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2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수탁자 및 위탁자,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없음)
-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분양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 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간 확장구간 내력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풍통 등의 제거로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정형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비확장세대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 계약 세대의 해당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상하부층의 발코니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침실1 발코니(1개소) 및 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 계약과 별도로 판매 ·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LG전자)

(단위: m²,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	설치대수 (실내기)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6A	옵션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76B	옵션2	4대	거실+침실1,2,3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A	옵션1	2대	거실+침실1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84B	옵션2	4대	거실+침실1,2,3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122A	옵션1	3대	거실+주방+침실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옵션2	6대	거실+주방+침실1,2,3,4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옵션3	7대	거실+주방+침실1,2,3,4+공간특화(알파룸 형성) 공간특화 (알파룸 형성)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가능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122B	옵션1	3대	거실+주방+침실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옵션2	6대	거실+주방+침실1,2,3,4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옵션3	7대	거실+주방+침실1,2,3,4+가족실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옵션4	8대	거실+주방+침실 1,2,3,4+가족실+공간특화(알파룸 형성) 공간특화 (알파룸 형성)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가능		12,000,000	1,200,000	1,200,000	9,600,000
134A 134B	옵션1	3대	거실+주방+침실1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옵션2	6대	거실+주방+침실1,2,3,4		9,700,000	970,000	970,000	7,760,000
	옵션3	7대	거실+주방+침실1,2,3,4+가족실		11,200,000	1,120,000	1,120,000	8,960,000
	옵션4	8대	거실+주방+침실 1,2,3,4+가족실+공간특화(알파룸 형성) 공간특화 (알파룸 형성)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가능		12,200,000	1,220,000	1,220,000	9,76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 선택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 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전자의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2A,122B,134A,134B 타입은 공간특화(알파룸 형성) 옵션 품목 선택 시, 거실면적이 변경되므로 해당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거실용 시스템에어컨 용량이 달라집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는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안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배관은 타입에 따라 안방발코니 또는 세탁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 가능합니다.
- 골조 공사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설치할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 2단 설치는 불가합니다 (실외기실 루버는 상부개폐창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진입 및 대피구로 사용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되므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 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선택품목(유상)

1) 설비/ 조명

(단위: m²,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6A,76B 84A,84B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실외기실	헤파필터 (경동나비엔)	- 미 선택시, 일반 전열교환기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122A,122B 134A,134B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76A	조명 특화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거실D/L 색온도 기능 없음 - 복도D/L, 아일랜드D/L, 욕실장 하부간접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옵션2	침실+욕실	침실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침실+욕실	옵션1+옵션2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76B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옵션1,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2 선택불가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옵션2	침실+욕실	침실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침실+욕실	옵션1+옵션2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84A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거실D/L 색온도 기능 없음 - 복도D/L, 아일랜드D/L, 욕실장 하부간접등, 신발장 하부 간접등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2	침실+욕실+현관	침실등+신발장 하부 간접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 +침실+욕실+현관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침실등+신발장 하부 간접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84B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옵션1,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2 선택불가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2	침실+욕실+현관	침실등+신발장 하부 간접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 +침실+욕실+현관	옵션1+옵션2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122A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거실D/L 색온도 기능 없음 - 복도D/L, 아일랜드D/L, 욕실장 하부간접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옵션2	침실+욕실	침실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침실+욕실	옵션1+옵션2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122B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옵션1,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2 선택불가 - 122B 경우, 욕실2(부부)만 욕실장 하부 간접등 적용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옵션2	침실+가족실+욕실2	침실등+가족실등+욕실장 하부 간접등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 +침실+가족실+욕실2	옵션1+옵션2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134A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거실D/L 색온도 기능 없음 - 복도D/L, 아일랜드D/L, 욕실장 하부간접등, 신발장 하부 간접등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옵션2	침실+가족실+욕실+현관	침실등+가족실등+신발장 하부 간접등+ 욕실장 하부 간접등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옵션3	거실+복도+주방 +침실+가족실+욕실+현관	옵션1+옵션2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134B		옵션1	거실+복도+주방	거실D/L+복도D/L+아일랜드D/L+식탁등	- 옵션1,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2 선택불가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옵션2	침실+가족실+욕실+현관	침실등+가족실등+신발장 하부 간접등+ 욕실장 하부 간접등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옵션3	현관+거실+복도+주방 +침실+가족실+욕실+현관	옵션1+옵션2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2) 인테리어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전타입	현관 중문	옵션1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수동)	- 미 선택시 현관 날개벽 설치 - 옵션 1,2 중 택1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옵션2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자동)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76A	복도 팬트리 특화		복도 팬트리	봉타입 시스템선반 (1개소)	- 미선택시 시스템선반 없음	370,000	37,000	37,000	296,000
76B						420,000	42,000	42,000	336,000
84A						550,000	55,000	55,000	440,000
84B						550,000	55,000	55,000	440,000
122A						330,000	33,000	33,000	264,000
122B	복도 팬트리 특화	옵션1	복도 팬트리 1		430,000	43,000	43,000	344,000	
		옵션2	복도 팬트리 2		330,000	33,000	33,000	264,000	
134A		옵션1	복도 팬트리 1		630,000	63,000	63,000	504,000	
		옵션2	복도 팬트리 2		570,000	57,000	57,000	456,000	
134B		옵션1	복도 팬트리 1		630,000	63,000	63,000	504,000	
		옵션2	복도 팬트리 2		570,000	57,000	57,000	456,000	
76A	아트월 마감 특화	옵션1	거실 전면	[옵션1] 유럽산세라믹타일+아트월 픽처레일등 [옵션2] 유럽산 세라믹타일+아트월 픽처레일등	[옵션1] - 미 선택시 거실전면 포세린타일 (800x400)만 기본설치 및 픽처레일등 등박스 및 전원 미시공 - 픽처레일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옵션2] - 미선택시 거실전면 포세린타일 (800x400)만 기본설치, 거실후면과 복도1면은 거실벽지로 시공 및 픽처레일등 등박스 및 전원 미시공 - 픽처레일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옵션2	거실 전면+후면+복도 1면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76B		옵션1	거실 전면			2,550,000	255,000	255,000	2,040,000
		옵션2	거실 전면+후면+복도 1면			8,900,000	890,000	890,000	7,120,000
84A		옵션1	거실 전면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2	거실 전면+후면+복도 1면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B		옵션1	거실 전면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2	거실 전면+후면+복도 1면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122A,122B	아트월 마감특화		거실 전면	유럽산세라믹타일+아트월 픽처레일등	- 미 선택시 거실전면 포세린타일 (800x400)만 기본설치 및 픽처레일등 등박스 및 전원 미시공 - 픽처레일등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134A,134B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6A,76B	바닥 마감특화		거실+주방+침실1,2,3 +드레스룸+팬트리	텍스처 광폭 마루	- 미 선택시 일반마루 설치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A,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122A,122B			거실+주방+침실1,2,3,4 +드레스룸+팬트리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34A,134B			거실+주방+침실1,2,3,4 +가족실+드레스룸+팬트리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76A 76B 84A 84B 122A 122B 134A 134B	주방 특화	옵션1	주방 싱크대 상판, 벽	[옵션1] 유럽산세라믹타일(밝은톤)+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옵션2] 유럽산세라믹타일(어두운톤)+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 미 선택시 벽면(벽타일), 상판(MMA 인조석), 기본 싱크볼 및 수전 설치 - 옵션 1,2 중 택1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2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1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옵션2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옵션1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2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1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옵션2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옵션1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2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1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옵션2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옵션1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2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옵션1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옵션2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22B 134A 134B	가족실 특화	옵션1	가족실 싱크대 상판, 벽	[옵션1] 유럽산세라믹타일(밝은톤)+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옵션2] 유럽산세라믹타일(어두운톤)+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	- 미 선택시 벽면(벽타일), 상판(MMA 인조석), 기본 싱크볼 및 수전 설치 - 옵션 1,2 중 택1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옵션2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옵션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2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옵션1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옵션2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전타입	다용도실 특화		다용도실	손세탁볼+하부장(PS)	- 미 선택시 손세탁볼+하부장 없음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76A	드레스룸 특화	옵션1	드레스룸	[옵션1] 드레스룸도어	- 미 선택시 좌식형 화장대+봉타입선반 기본설치 - 옵션 1,2,3,4 중 택1 - 의류관리기 선택시(옵션3,4) 선반 일부 축소됨 - 의류관리기는 삼성, LG전자 중 택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76B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옵션3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옵션4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84A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B		옵션1				드레스룸도어+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옵션3				[옵션3] 드레스룸도어+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의류관리기 [삼성전자, DF18CB8700CR]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옵션4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122A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22B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34A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134B		옵션1					540,000	54,000	54,000	432,000
		옵션2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옵션3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옵션4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6A	불박 이장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 미 선택시 수납장 없음 - 옵션1, 2 각각 선택 가능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76B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880,000	188,000	188,000	1,504,000
84A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 미 선택시 수납장 없음 - 옵션1, 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 2 선택불가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옵션3	침실2, 침실3 교차형	교차형 불박이장 (2개소)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84B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옵션3	침실2, 침실3 교차형	교차형 불박이장 (2개소)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122A		옵션1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 미 선택시 수납장 없음 - 122A 침실4 불박이장은 기본설치 됨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122B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 미 선택시 수납장 없음 - 옵션1, 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3 선택시, 옵션1, 2 선택불가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3	침실2, 침실3 교차형	교차형 불박이장 (2개소)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134A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3	침실2, 침실3 교차형	교차형 불박이장 (2개소)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134B		옵션1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옵션3	침실2, 침실3 교차형	교차형 불박이장 (2개소)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전타입	욕실 특화	옵션1	욕실1(공용)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양변기+반다리일체형 세면기+ 세면플랫 수전+욕조샤워 수전 슬라이드바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 욕실1(공용), 욕실2(부부) 각각 선택 가능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옵션2	욕실2(부부)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양변기+반다리일체형 세면기+ 세면플랫 수전+해바라기 샤워수전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122A,122B 134A,134B	공간특화 (알파룸 형성)		거실 옆 공간	2도어 유리슬라이딩 도어(+날개벽)+거실벽+알파룸등	- 미선택시 바닥, 벽, 천장 거실과 동일한 마감재로 시공 - 미 선택시 기본 복도등 으로 설치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3) 가전

타입	품목	선택	설치위치	세부사항	제조사	모델명	참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전타입	주방 쿡탑	옵션1	주방	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삼성전자	NZ63T5601AK	-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 삼성전자, LG전자 중 택1	700,000	70,000	70,000	560,000
		옵션2			LG전자	BEY3GBI		900,000	90,000	90,000	720,000
		옵션3		3구 인덕션	삼성전자	NZ63T5701AK		800,000	80,000	80,000	640,000
		옵션4			LG전자	BEI3GQBI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22B 134A 134B	가족실 쿡탑	옵션1	가족실	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삼성전자	NZ63T5601AK	-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 삼성전자, LG전자 중 택1	700,000	70,000	70,000	560,000
		옵션2			LG전자	BEY3GBI		900,000	90,000	90,000	720,000
		옵션3		3구 인덕션	삼성전자	NZ63T5701AK		800,000	80,000	80,000	640,000
		옵션4			LG전자	BEI3GQBI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전타입	식기 세척기	옵션1	주방	12인용	삼성전자	DW60T7065SS	-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설치 - 옵션선택 시에만 해당용 콘센트 설치 - 삼성전자, LG전자 중 택1	820,000	82,000	82,000	656,000
		옵션2			LG전자	DIB22S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전타입	전기 오븐	옵션1	주방	오븐 및 전자레인지 겸용	삼성전자	NQ36A6555CK	- 미 선택시 냉장고 설치공간만 제공 (상부장, 키 큰 수납장 기본 설치) - 옵션선택 시에만 1구 콘센트 3개소 설치, 미선택시 2개소 설치 - 삼성전자, LG전자 중 택1	350,000	35,000	35,000	280,000
		옵션2			LG전자	MZ385EBT1		430,000	43,000	43,000	344,000
전타입	냉장고 SEST	옵션1	주방	냉장+냉동+김치	삼성전자	냉동 RZ34C7965AP(우) RZ34C7865AP(좌) 냉장 RR40C7995AP(우) RR40C7895AP(좌) 김치 RQ34C7945AP(우) RQ34C7845AP(좌)	- 미 선택시 냉장고 설치공간만 제공 (상부장, 키 큰 수납장 기본 설치) - 옵션선택 시에만 1구 콘센트 3개소 설치, 미선택시 2개소 설치 - 삼성전자, LG전자 중 택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옵션2			LG전자	냉동 BC1F2AA 냉장 BC1L2AA 김치 BC1K2AAC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전타입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욕실1(공용)	환기+온풍+제습+드라이 (욕실1,2 일괄적용)	힘펠	FHD3-C150P	- 미 선택시 기본 욕실환(배기전용) 설치	600,000	60,000	60,000	480,000
		욕실2(부부)						600,000	60,000	60,000	480,000
		욕실1+욕실2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유상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 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없음.
-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76B는 76A옵션의 색상과 마감 84B, 122AB, 134AB 타입은 84A 타입 옵션의 색상과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모든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동급 및 동급이상)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 품목 선택 시 시공범위는 해당 기본 마루가 설치된 바닥 공간 일체가 텍스처 광폭 마루로 일괄 적용 및 시공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옵션 품목의 전자제품은 제품별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중 한개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 가전제품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의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 선택 시 기본 수납장(도어마감)이 동일 규격으로 시공됩니다.
- 냉장고 SET 옵션 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장(상부장 및 측면 키큰장)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될 수 있으며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SET옵션 품목 선택 시 해당 브랜드의 냉장고 도어 색상은 선택 가능하며, 도어 개폐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냉장고SET 옵션품목의 전자제품은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중 한개사만 선택 가능합니다.
- 냉장고 SET옵션 품목 선택 시 해당 제품용 1구 콘센트 3개가 설치되며, 미선택 시 1구 콘센트 2개로 설치됩니다.
- 복도 팬트리의 가구 도어는 기본 설치됩니다.
- 본 시공 시 옵션 세라믹타일과 도배지와 만나는 접합부는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아트월과 만나는 커튼 박스 안쪽은 벽지 시공됩니다.
- 아트월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 시 거실전면은 기본타일(800x400)으로 시공되며, 거실후면과 복도벽면은 거실벽지로 시공되며, 조명등박스는 삭제됩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의 세라믹타일 색상은 밝은색과 어두운색 중 선택가능하며, 가구의 컬러는 한가지로 모델하우스와 동일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 벽타일, 인조석상판(MMA), 기본 싱크볼, 기본 수전에서 유럽산 세라믹 타일(상판+벽체), 와이드 사각 싱크볼, 터치식 수전으로 특화되어 시공됩니다.
- 기본 품목과 옵션 품목의 상판 두께는 상이 하나, 주방 싱크 높이는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특화 옵션 품목 미선택 시 옷봉 타입의 기본형 드레스룸 선반이 설치되며, 침실1과 동일한 벽지로 시공됩니다.
- 드레스룸특화 옵션 2, 3, 4 선택시 벽판넬 조명선반, 액세서리가 설치되며, 평형별로 액세서리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특화 옵션 3, 4 선택 시 시스템 선반이 일부 축소되고 의류관리기가 설치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이동식)가 제공되며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특화 옵션 품목 미선택 시, 손세탁볼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위치에 수전 및 배수설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특화 옵션 품목은 공용욕실, 부부욕실 각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욕실 특화 옵션 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가 설치되며, 액세서리 및 욕조(공용욕실), 분리형비데(부부욕실)는 기본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은 공용욕실, 부부욕실 각각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이 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수·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명칭은 사업계획승인도면 기준으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의 선택 품목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통합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사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시, 동급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및 분양홍보물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사업계획승인도서 기준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실 설치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또는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한하여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전북은행	1023-01-0424830	(주)코람코자산신탁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이후 발행하는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IX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현관,<타일>발코니	각실 바닥 콘크리트 노출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발코니,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재, 석재(인조강화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아일랜드상판,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3구 쿡탑, 렌지후드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포함)관련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및 스프레이건, 손빨래수전, 드레스룸, 팬트리, 불박이장, 시스템선반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환기시스템,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 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3)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m²,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6A	76B	84A	84B	122A	122B	134A	134B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30,302,000	30,610,000	33,310,000	33,451,000	50,344,000	49,417,000	53,381,000	52,982,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의 경우 계약 전 시공되지 않는 품목을 명확히 확인 후 계약을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감리,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에 의한 구조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류루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 입주예정월 : 2026년 0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호 또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관리 부재 또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도 사업주체 및 행정청에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지하수의 상향수압 검토결과에 따라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 단, 공간만 제공하며, 집기류 등 시설물은 제공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 높이 : 지상주차장 1층 진입 및 유효높이는 2.7M, 지하주차장 1~2층 진입 및 유효높이는 2.3M, 주차장 차로 폭은 6M 이상,

※ 단, 101동~104동 지하2층(A구역), 105동~108동 지하1층(B구역)에 한해서 유효높이는 2.7m이고, 부출입구를 통한 지하1층 진입유효높이는 2.7m(택배차진입), 주차장 차로폭 6M 이상

■ 하자 담보책임기간 및 보수절차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1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0.216g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3-101-0003000호	₩238,331,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 중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 축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300,500,000	-
전 기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714,923,000	-
정보통신	(주)대성종합기술단	205,000,000	-
소 방	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780,256,302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코람코자산신탁	(주)대성아이앤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22, A-919(마곡동, 파인스퀘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잠실시그마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110111-3449356	110111-0274699

Ⅹ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구조변경(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登記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 사업부지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또는 가스정입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함.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1)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
- 준공 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공동주택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계 및 시공관련 변경사항

- 본 공동주택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 종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설비계획 등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122A,122B,134A,134B타입은 추가 발코니 또는 PS가 별도로 구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면상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옥탑구조물 및 옥상구조물의 재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형식은 터파기 완료 후 지내력시험 등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변경이 진행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재질, 높이 등) 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조경면적은 규정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주변과의 단차로 인해 단지 경계부에 옹벽, 조경석쌓기 등의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위치나 공법은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의 수종, 위치, 수량, 규격 등은 인허가,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적용됨)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위치, 수량, 규격, 소재, 디자인 등은 인허가,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적용됨)
- 단지 내 주동 주변으로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위치나 디자인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 헬스의 위치, 규격, 디자인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보도의 경사도는 주변 레벨을 고려하여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내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일부 동/세대에서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에서는 옹벽으로 인해 시선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는 이사 시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지 내 단위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재료, 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는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과정, 허가권자 경관자문결과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실 명칭은 사용목적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설계도면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은 시스템욕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문턱 높이는 욕실화 높이와 관계없이 물막이 용도로 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모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가 확정·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건식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구조개선등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설비가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옥상층(103동, 106동, 108동)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3동, 106동, 108동), 지하1층(101동 PIT, 103동 PIT), 지하2층(106동 PIT)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한전 지상개폐기,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설비, 공용 조명 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빗물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일부동 및 일부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등 단지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상부에는 의상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지상에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된 상황일수 있음.

(3)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물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종 홍보물에 기재된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단지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각종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종 인쇄물에 표현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 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에 설치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유니트(84A,76A)는 확장 및 옵션 품목이 적용되었으며, 기본 품목은 유니트 내 상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 및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거나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급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자재의 내용 및 사양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단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 포함 품목만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 및 집기류(테이블, 의자, 인테리어나소품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용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시설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발코니 등에는 상층에서 내려오는 우오수 배관이 본공사시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폿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등), 통합 스위치 등의 제품 사양(형태 및 모양 포함) 및 위치,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명칭

- 단지 및 단지내 명칭, 외벽 로고사인,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외부시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과 단지 외부와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접대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과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포함)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의 위치 및 사양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이 식재 되지 않으며, 식재 수종, 위치, 수량, 규격 등은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적용됨)
- 단지 내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와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놀이터, 운동공간, 휴게공간, 수공간, 산책로 등에서 인근 저층부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인 입주자의 의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 등 관리의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인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부담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외부 단차로 인해 웬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나 디자인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 주동,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마감은 디자인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시설물의 경우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이며, 허가권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팬룸, 제연팬룸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 및 단체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또는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및 문주, 그 밖의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101동 후면의 대지경계 구간에 방음벽 (높이 11m+상단음원방향 각임형 1m, 연장길이 약 46m)이 설치 될 예정으로 시야 간섭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 계약자는 모형 및 CG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동측 외부계단(102동 동측)은 인접단지의 월명공원 이용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벽은 당사와 상관없이 설치내용의 변경 및 설치여부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의 기반시설(공원, 도로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주차장의 단지 내 입구 위치에 따라 일부 동/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도로, 상업시설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의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시설(웬룸, 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 주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위치에 면하는 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출입구, 차량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세대는 소음 및 분진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전동 지상 또는 지하 인근
 - 주민공동시설 : 102동하부 (지하1층)
 - 펌프실, 저수조(아파트, 근린생활시설용) : 102동~103동 사이 지하2층
 - 주차장 램프 : 101동, 102동~103동 사이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 104동~105동 사이 지상1층
 - 어린이놀이터 : 101동~104동 인근
 - 기타시설은 배치도 참고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 장애인 보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동현관 상이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및 악취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보행자/차량 안전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제기 및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단위세대 및 마감재

- 76B는 76A의 색상과 마감 84B, 122AB, 134AB 타입은 84A 타입의 색상과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각 공간별 크기는 마감재, 가구 설치 등으로 실 시공 시 안목치수가 도면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고는 2.3m이며, 발코니 확장시 거실에만 우물천장이 설치됩니다. 또한 공사여건에 따른 최상층, 코어등 층고변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창호의 나누기, 크기 및 난간대의 제품, 높이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가 설치되는 도어에는 전면접이식 손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욕조 및 샤워부스 제외)
- 욕실 내 악세사리류 및 욕실장 등의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상황 및 사용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부창호는 외관디자인 및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서 마감재 및 색상이 다릅니다.
- 주방가구의 쿡탑 후면의 뒷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뒷선반의 높이, 깊이, 형태 등에 따른 사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 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관람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 색상 및 패턴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선풍통 등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펜트하우스)의 옥외공간은 지정타일마감이 적용되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펜트하우스)의 옥외공간은 최상층세대에 속하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책임은 최상층세대에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 포함)에는 드레인, 선홈통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설치 개소와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욕실화 높이와 관계없이 물막이 용도로 시공됩니다.
- 다용도실은 본공사 시 PD도어로 시공됩니다.
- 측벽쪽 옥외공간 출입문은 PD도어 및 AD도어 2중으로 설치되며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되며 보일러의 연도는 보일러실 내부 및 동 외벽에 설치됩니다.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냄새 및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등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협소해지며 가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손빨래장은 PS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품목 선택 시, 터치식 수전이 설치되며 하부장 내 컨트롤박스가 설치됨에 따라 수납에 간섭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특화 옵션품목 선택 시, 하부장 내 급,배수 배관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수납에 간섭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앞 실외기실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1층 제외) 천장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 2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유닛 설치 여건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 사이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실의 그릴 주변은 가이드판넬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유닛 장비 및 덕트는 발코니 또는 세탁기실 천장에 노출 시공되고 덕트와 연결된 각 실의 디퓨저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유닛 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가구, 거울 후면 등에는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내부마감 석재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바닥단차는 건본주택과 본공사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에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정/후면/측면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하이브리드, 인덕션 등)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한 세대에도 주방에 가스배관 및 밸브가 설치됩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욕실젠다이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정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렌지후드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상부장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바닥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환기디퓨저 및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렌지후드 및 욕실환용 닥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은 세대 직배기로 시공되고, 최상층세대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벤트관이 설치되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타입별, 배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본공사시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차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보일러, 급/배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닛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천정과,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외부창호는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저층부(2~3층 이하) 및 필로티 내부공간은 석재, 석재뿔칠, 지정벽돌이나 타일, 수성페인트 등을 혼용하여 시공하며, 고층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의 상부그릴창호는 개폐가 가능한(여닫이창) 창호로써, 바람 및 외부요인에 의한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또는 비상시에만 단시간 개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풍으로 인한 탈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전체 LED 조명이 기본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등), 통합 스위치 등의 위치, 사양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은 관련 기준에 따라 노출된 침실 벽체 등에 설치되므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한국전기설비규정 28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 통신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및 통신 마감재(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윌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등), 통합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옵션의 선택,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기 및 통신 마감재(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윌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류 및 스위치류 등), 통합스위치 등)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변경 포함)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빨래건조대는 사용 시 높이에 따라 실외기실 문 개폐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됨.

(9)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 등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대복리시설 내 임의의 공간에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부대복리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피트 및 주차장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가동 및 유지보수의 비용은 발생할수 있으며, 해당비용은 공용전기요금 및 관리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PIT, PD, EPS TPS실 등 내측 벽체 및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내부 마감재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아파트 1,313대, 근린생활시설 3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내부의 고저차로 인하여 층별 주차장에서 일부 동은 접근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실내 및 실외, 지붕 등에 설치)로 인해 인접 동/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부출입구 인근 3대)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아파트 주차는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의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이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엘리베이터는 각 동간의 거리에 따라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에 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주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 단지내 공용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간조명으로 인한 세대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 등은 동급 및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와 함께 대지지분은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차로, 계단실, 조경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유권, 일방적인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하역장, 차량동선 등이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면하지 않아 인접도로가 혼잡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기둥 및 벽체의 위치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 천장고, 창호높이 등은 상이하며, 본공사시 근린생활시설 진입레벨 및 외부여건에 의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미관을 위해 타 호실의 천장으로 통신설비, 배관, 배선, 케이블트레이 등이 관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시공되며(실내기, 실외기 장비는 미설치), 스탠드에어컨 등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냉매배관 사용이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공사시 창호의 높이 및 형태, 환기창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레벨이어도 1층은 지하1~지상1층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천장 마감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데크 시공시 구조기능과 관계없는 데크의 구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후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주차장 분쟁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관리규약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차 차단기는 주출입구에 1개소, 부출입구에 3개소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출입구 및 지하홀의 층고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천장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101동~104동 지하2층(A구역), 105동~108동 지하1층(B구역) 통로는 2.7m이고, 택배차 진입을 위한 부출입구 주차장 진입높이는 2.7m입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경비실, 통합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 동출입구형, 필로티+동출입구혼합형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자전거보관소는 지상 및 필로티 내 위치해 있으며, 제품사양,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계전기 설비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세대 내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는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선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품목 미 선택시,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 등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선택해야하며, 설치 세대 및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은 세대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 102동, 103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층에 전기실/발전기실, 102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층에 기계실/저수조가 배치되어 있어 시설관련 급배기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청주일반산업단지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사항

- 당 사업지 주변의 월명공원등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현황은 현재 계획을 반영하여 표현 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가 속한 청주일반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월명공원은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상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부지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산업단지 및 사택시설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일반산업단지는 오래전에 입주된 공장들이 산재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악취 관리를 해도 일부 냄새로 인한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는 청주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의한 공장가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폐수(하수)처리시설을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하므로, 향후 폐수(하수)관련 비용은 청주시가 아닌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환경시설관리(주)]에서 부과되며, 오염부하량 산정·분배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고, 폐수처리부담금 이외에 관로이용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한 도로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인허가에 따라 출입구 인접하여 교차로가 신설되거나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 봉정초등학교
 - 중 학 생 : 청주시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 당 아파트 해당 통학구역은 현재의 기준이며, 향후 입주시기에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사업승인시 권고 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 “협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 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반납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인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지 관리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고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다함께 돌봄센터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 입니다.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며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관련 사전안내 및 수요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추후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 동 옥상에는 통신장비(TV공청 안테나, FM, 디지털 안테나, 위성안테나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및 피뢰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바람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차량도로와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생과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축벽이 외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103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중에 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변도로와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행출입구는 계단, 경사로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계약전 단지 보행출입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주변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계획으로 인해 세대내 음영이 생길 수 있으며, 벌레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단지내 교차로에는 반사경 등이 부착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시공 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공사시방서(사용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순으로 정합니다.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모델하우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번지	■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7-2 ■ 홈페이지 : brand.hldni.com/cheongju ■ 분양문의 : 1800-9118 ※ 본 입주자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